

기 · 한 · 용 · 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사인 203 1742 (전화번호 337.)	전결규정	조항 전결사항
처리기간	결 재 자		
시행일자	제2부서장	제1부서장	시 장
보존년한			
보내무국장 조인사과장 기고과계장 관	협		
	조		
	기안책임자		
경유 수신 참조	수신처 참조	발신	
제목	공무원 하계 복장 착용에 관한지시		
공무원의 하계 복장 착용에 관하여 국무총리로부터			
지시가 있어 시달하니 전 직원에게 주지시켜			
시행에 착오 없도록 할것			
스복창			
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수 있는 범위			
내에서 반소매 와이셔츠나 남방셔츠 등			

0201 1-8A

190mm X 268mm 택 상지 50g/n²

1959. 11. 10. 승인

040

(서울특별시립 삼성 세업보도원 인쇄)

감소하고 간편한 복장을 착용할 것

(여자 직원은 반드시 청남색 사무복을
착용할 것)

2. 적용 대상

가. 시 산하 권 직원 (제복을 착용하는 공무원 제외)
과만. 국무회의 차관회의에 참석할
때와 의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
외국인과 접촉하는 경우에는
정장을 할 수 있다

나. ^{시민회}본청 및 구청, 시민봉사실 근무 직원은
별도 지시에 의한 복장을 착용한다

3. 실시기간 1972. 6. 20 ~ 1972. 8. 31 끝